

국제교육센터 자체직원(계약직) 채용 공고(안)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가. 분야: 유학생 관련 지원 업무(부서장 발령 자체계약직)

나. 인원: 1명

2. 근무조건

가. 근무지: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육센터

나. 담당업무

1)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입시 지원 등(중국어)

2) 중국어 공문서, 홍보자료 등 제작 및 중문 홈페이지 관리

3) 이외 상기 관련 업무

다. 임용예정일: 2020. 1. 20(월) 예정

※ 계약기간 1 년, 1 년 단위 평가 재계약, 2 년 종료 후 인사 주관부서의 심사(면접)를 통하여 무기계약 전환 가능

라. 근무시간: 09:00~18:00, 주 5일 상근

마. 급여: 연봉 22,000,000 원, 4대 보험 가입, 퇴직금 별도

3. 지원자격(아래 가. ~ 마. 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)

가.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(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

나. 중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(외국인 지원 가능)

다.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

라. 취업비자 발급 등 대한민국 입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마. 성 관련 범죄나 학교/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전력이 없는 자

바. 우대사항: 유학생 관리 업무, 외국인 입시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

4. 전형방법 및 일정

구분	일자	비고
접수기간	<u>2019.12.30.(월)</u> ~ <u>2020.01.12.(일)</u>	본교 직원채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://gms.korea.ac.kr:8050/recruit/index_staff.jsp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0.01.13.(월)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면접전형	2020.01.14.(화)	참석예정자가 2명 미만일 경우에는 면접전형 일정을 연기할 수 있음 평가항목: 직무역량, 공통역량 등
최종합격자 발표	2020.01.16.(목)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※ 전형일정은 본교 일정 상 조정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

5. 제출서류

- 가. 접수기간 제출자 전원: 임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온라인 접수 시 직접 입력)
 - *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(비자 종류)을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명기할 것
- 나.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 - 1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 부
 - 2)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(해당자에 한 함)
 - 3) 경력증명서 1 부(해당자에 한 함)
 - 4) 여권 사본 1 부(외국인 지원자에 한 함)
- 다. 최종합격자에 한함
 - 1) 건강진단서, 서약서 각 1부
 - 2) 사진(35*45mm, 천연색) 4 매
 - 3) 상기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6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.
- 나. 전 분야 모두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,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합니다.
- 다. 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마감 1~2 일전 접수 완료를 요청드립니다.
- 라. 접수 완료 후 지원서 내용은 수정 불가하며, 지원서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
- 마. 추후 지원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,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바.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사. 채용 서류 반환 안내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 조(채용서류의 반환)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 1 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 1 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 1 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 1 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아. 문의: 044-860-1662(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교육센터 채용담당자). 끝.